



ESG
모범기준

2021. 8

CONTENTS

01 | 환경 모범기준

① 전문	6
② 리더십과 거버넌스	8
③ 위험 관리	13
④ 운영 및 성과	18
⑤ 이해관계자 소통	30
⑥ 부록	33
⑦ 참고문헌	37

02 | 사회 모범기준

① 전문	40
② 리더십과 거버넌스	42
③ 비재무 위험 관리	47
④ 운영 및 성과	51
⑤ 이해관계자 소통	63
⑥ 부록	65
⑦ 참고문헌	76

03 | 지배구조 모범기준

① 전문	80
② 이사회 리더십	83
③ 주주권 보호	97
④ 감사	102
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09
⑥ 참고문헌	114



01

환경 모범기준

① 전문	6
② 리더십과 거버넌스	8
③ 위험 관리	13
④ 운영 및 성과	18
⑤ 이해관계자 소통	30
⑥ 부록	33
⑦ 참고문헌	37

1 전문

● 환경 모범규준의 제정 배경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기업도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내기업들은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과 그 구성원은 투철한 환경경영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환경 모범규준의 제정 목적

본 모범규준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내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경영의 방향을 제시하여 관련 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환경 모범규준의 내용 및 구성

본 모범규준은 국내외 환경정책과 관행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의 원칙과 기준을 담고자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내기업들이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환경경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모범규준은 전문,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부록 등 네 부문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환경 모범규준의 적용

본 모범규준은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기업도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환경경영 또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본 모범기준은 다양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기반하고 있는 바 국내기업은 본 모범기준을 기본으로 자발적인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모범기준도 국내외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 모범기준의 개정 배경

지난 2010년에 제정되어 발표된 환경 모범기준은 그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선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글로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환경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바람직한 환경경영을 유도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모범기준은 무엇보다도 전사적 환경경영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위험 관리 등을 신설하여 전사적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의 통합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정보공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나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과 같은 자율 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도 추가하여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으로, 우리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제품 및 서비스 전 과정 관점에서의 자원순환을 고려하여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구현 기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환경경영을 위험 관리 차원을 넘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활용을 기대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재무정보 표준화가 보다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모범기준도 관련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② 리더십과 거버넌스

1

환경경영 리더십

1.1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의 의의 환경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최고경영진의 환경경영 의지 표명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의지 및 지원활동을 경영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진은 '환경방침'을 통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투자계획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고경영진의 환경경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의지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 활동을 추가적인 비용문제로 인식하거나 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경영활동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은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에 의한 환경경영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2 기업은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한 환경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방침 수립의 의의 기업은 효율적인 환경경영을 실행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요구되는 환경책임 및 성과의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방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방침의 문서화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 및 환경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환경방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방침은 최고경영진이 승인한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되어야 하며, 기업은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방침의 내용 및 요건 환경방침은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시된 환경성과와 관련된 조직의 환경경영 이념 및 방향을 의미한다. 환경방침은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틀을 제공하며 조직의 환경경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

- 조직의 환경경영 이념 및 활동 방향을 제시할 것
-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의 성격, 규모 및 환경영향을 포함한,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할 것
- 환경목표를 설정하는 틀을 제공할 것
- 조직의 상황과 관련 있는 환경오염 예방과 그 밖의 구체적인 영역(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다양성 존중,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환경경영 의지를 포함할 것
- 조직의 준수 의무사항을 충족한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 환경성과 향상을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환경방침의 이행 최고경영진은 환경경영 방침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환경경영 방침이 기업 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2.1 기업은 환경경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경영 전략은 기업의 경영전략 및 방침과 통합되어야 한다.

환경경영 전략 수립 환경경영 전략이란 기업이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 설정 및 효율적 자원 배분 관리 방법을 의미한다. 환경경영 전략은 전 가치사슬을 고려한 관점에서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내부의 환경성과를 높이며, 나아가 경영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기업은 환경전략 수립 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시각에서 환경경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경영과 경영전략과의 일관성 환경경영 전략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영전략임을 인식하고 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 및 목표와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 전략 수립 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2.2 기업은 환경경영 실행을 위해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목표 수립 기업의 효과적인 환경경영 활동을 위해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의무사항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계층에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의 환경경영 방침 및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산업적 특성, 시장환경 변화,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목표 관리체계 기업은 전사적 차원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영역에 따른 환경영향과 시간 주기를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은 전사적 환경목표와 함께 측정가능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한 단기 및 중·장기 환경목표를 수립하여 연도별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행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 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기업의 환경목표 및 시점과 연계한 정량적·정성적 세부 추진 계획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환경법규, 요구사항의 개정 동향 및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환경경영 거버넌스

3.1 기업은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및 주요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구축 기업은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환경경영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환경경영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사적 환경경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경영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직체계가 구성되고 인적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며 환경경영 및 성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환경적 위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 효율성 제고 기업은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PDCA(Plan-Do-Check-Act, 계획-실행-점검-조치)를 고려하여 환경경영 활동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나아가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적 환경목표 및 조직 내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기업의 중대성 이슈와 연관시켜 관리하고, 보상체계를 연동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기업은 환경경영의 목표, 활동 및 성과 등 주요 이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환경경영 활동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기업의 환경경영 이슈 및 주요 결정사항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환경경영의 중요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환경경영의 실행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단기적 환경성과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환경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향후 경영활동의 위험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중·장기적으로 경영활동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과 경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사회 내에 환경이슈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사회는 환경경영 실행 및 감독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3.3 기업은 환경경영체계를 실행 및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을 전담하는 실무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추진조직 구축 환경경영체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환경경영 전담 실무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담 실무조직 구성 및 운영 환경경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전담 실무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된 명확한 역할, 책임,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 실무조직의 책임자는 각 부문별 조직의 상호 간 의견조정 및 의사소통뿐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경영진에 환경경영 활동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전담 실무조직의 구성원들은 환경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기업은 임직원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임직원의 환경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경영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 기업의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이 환경적 영향이 있는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경영의 의미와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 교육 기업은 주요한 환경정보 및 환경경영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환경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일시, 교육명 등 환경교육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환경교육의 내용은 법령이나 기술 동향에 맞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며, 교육 대상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경영 목표 및 계획 공유 기업은 환경경영 목표 및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어 모든 임직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업무와 활동을 파악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환경방침 및 전략과 더불어 환경목표와 계획을 모든 임직원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참여 유도 기업은 환경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조직의 환경방침과 목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임직원이 준수하고 그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환경경영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환경경영과 관련된 사내 아이디어 또는 관심사항을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거나, 임직원 주도의 친환경 프로젝트 혹은 캠페인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하향식(top-down) 뿐만 아니라 상향식(bottom-up)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험 관리

1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평가 및 관리

1.1 기업은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환경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여야 한다.

위험과 기회 식별의 필요성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 위험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경영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이용에 따른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형성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을 통해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 구축 기업은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경영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 규명 기업은 환경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적 특성 및 시장 변화를 고려할 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잠재적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기업은 주요한 환경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써 환경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위험과 기회 우선순위 도출 환경경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기업의 산업적 특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경영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 및 기회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경영 위험의 영향과 노출 수준 등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3 주요한 환경 위험 및 기회는 환경경영 방침 또는 전략 수립 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과 통합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위험 및 기회 관리체계 기업은 환경경영 위험 및 기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운영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경영

담당자에게 환경경영 위험 관리, 성과 및 기회 요인 발굴에 대한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친환경 자금 조달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을 이행하거나 친환경 사업 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할 수 있다. 녹색채권은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기업은 녹색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친환경 활동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평가, 공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2.1 기업은 사업 전략과 재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식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야 하며,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규제와 물리적 요소의 변화는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신재생 에너지 도입,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에 기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a. 위험 요인

위험 유형	위험 요인	주요 내용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s)	단기(Acute)	허리케인, 태풍, 홍수 등과 같은 단기적 기후현상의 빈도 및 강도 증가로 인한 위험
	장기(Chronic)	장기적 기후패턴변화(예: 평균기온의 지속적 상승)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는 이상고온현상 지속 등으로 인한 위험
전환적 위험 (Transition risks)	법규(Legal)	모든 유형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 기후변화 관련 규제 및 정책
	시장(Market)	특정 원자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의 변화
	평판(Reputation)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업의 기여 또는 저항에 대한 소비자 또는 사회의 인식 변화와 연결되는 모든 위험
	기술(Technology)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경제시스템을 촉진하는 기술의 개발 및 혁신과 관련한 모든 위험

b. 기획 요인

기획 요인	주요 내용
자원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높은 제품 및 물류 시스템의 이용 - 효율성 높은 운송수단의 이용 - 재활용/재이용 - 효율성 높은 건물의 이용 - 물 사용량 및 소비량 저감 - 기타
에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에너지 이용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활용 - 신기술 이용 - 탄소시장 참여 - 분산전원 이용 - 기타
제품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 -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상품 개발 - R&D 및 혁신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 사업군의 다변화 - 소비자 선호도 변화 - 기타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 공공섹터의 인센티브 활용 - 녹색채권 및 인프라의 인수, 자금조달 -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금융상품 개발 - 기타
회복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참여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수단 도입 - 대체자원의 확보 및 다변화 -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도입 -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장기적 재무/금융 부문의 투자 강화 - 기타

출처: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June 2017

2.2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획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위험 요인 분석 기업 경영활동 시,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위험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획 요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미칠 전략적·재무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획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좌초자산 등의 위험 고려 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혹은 철회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후 변화는 기업에게 평판 위험을 넘어 재무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좌초자산(stranded asset)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당 위험에 노출된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자산의 저탄소 포트폴리오 전환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금융 개발 및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기업은 미래의 투자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사업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나리오 분석 활용 및 적용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과 위험 수준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래예측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할 때는 전사적 수준뿐 아니라 시장 수준, 기업의 전략, 자본 배분, 비용 및 수익에 미치는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관리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기업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직·간접적인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및 환경 위험을 신용위험의 하나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환경 관련 이슈들을 단기적인 수익성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도 비재무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중대한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도출하여 환경성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은 내적 위험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 석탄화력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등 위험이 큰 투자 및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나 고효율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은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및 운영위험과 같은 금융권의 전형적인 위험과 기회 요인을 환경 및 기후변화와 연관시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외적 위험 관리 차원으로는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에 있어 고객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기후변화 및 환경 위험의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고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험관리체계

3.1 기업은 규명한 환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사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기업의 경영활동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적 측면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위험 예방 전략 수립 및 추진 기업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위험, 기후변화 위험 등의 환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온실가스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뿐 아니라 공급망의 환경책임을 고려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 여부를 평가하여 개선 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 위험 대응 기업이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환경법규 및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오염 배상책임,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조업정지 등 다양한 직·간접적 제재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 및 미래의

책임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개정 동향 및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환경규제로 인한 위험뿐 아니라 그 밖의 환경 위험(환경사고 등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 투자자의 투자 회피,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부자재, 용수 및 에너지 절감, 청정생산기술 도입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력 강화, 시장 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 더불어 경영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사고, 분쟁, 민원의 발생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예방적 차원의 환경 위험 관리 활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개선, 자본비용 감소를 유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3.2 기업은 잠재적 비상사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단계별 대응 절차 수립 기업은 경영활동 시, 부정적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사태 및 사고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사전예방, 조기감지, 확산방지, 조기복구 등에 이르는 각 단계별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유형별·단계별 시나리오 수립 기업은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유형별·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정기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방 및 점검 활동 기준을 수시로 검토하여 조치 내역을 문서화 하고 내부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기업은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 발생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후 조치 즉각 이행 기업은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오염 행위에 의해 발생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 내 시설로 인한 제3자의 환경오염피해(점진적, 급진적)에 대하여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거대 피해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업종별 특성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운영 및 성과

1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1.1 기업은 제품(서비스 혹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전략을 설계, 수립하는 단계에서 글로벌 혹은 지역사회의 환경이슈를 고려하여야 한다.

친환경 설계의 의의 '친환경 설계'란 제품(서비스)을 기획, 개발, 설계하는 단계에서 제품(서비스) 전 과정(life cycle)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저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과정' 단계에는 원료물질의 채취, 설계, 생산, 운송·배송, 사용, 사용 후 처리 및 최종 폐기가 포함된다.

친환경 설계를 통한 순환경제 구현 기업은 친환경 설계 활동을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또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가능하도록 제품 전 과정 관점에서 자원순환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분리 배출이 용이하도록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 내 재생원료 함량을 확대하는 등 기업은 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사업 전략을 구상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생산에서 소비, 폐기로 이어지던 일방적인 자원의 흐름을 최종처리 이전에 순환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대비 회수율이 낮으며 소각하거나 부적정 처리 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기업은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계 단계에서 전자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1.2 기업은 친환경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정의 '친환경 제품'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줄이도록 체계화된 것을 의미한다. 생산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인 기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친환경 인증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은 환경표지(마크), 환경성적표지, GR마크를 비롯한 국내외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기업은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친환경 경영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노력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2

친환경 공급망

2.1 기업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환경성과 향상과 제품(서비스) 책임주의 구현을 위한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친환경 공급망 관리의 의의 ‘공급망 관리’란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부터 생산, 판매, 물류 등을 거쳐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전 과정의 가치사슬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친환경 공급망 관리’란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부터 사용,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제품 제조사 및 공급 협력업체의 환경 위험에 대한 사전적 예방뿐 아니라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하여, 전 과정 가치사슬 단계에서 환경관리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환경정보를 고려한 친환경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2 기업은 자사의 환경성과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의 환경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상생경영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환경경영의 필요성 협력업체의 환경문제가 기업의 최종 제품 및 서비스에 반영되므로 기업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사슬 전체의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고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협력사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협력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환경성과 실적을 점검하는 등 정성·정량적인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아가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환경성과 평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결과는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이행능력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은 협력업체의 환경성과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력업체에게 장기공급권, 계약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평가 절차 및 결과를 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 지원 기업은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사 환경경영 원칙 마련 지원, 협력사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실행에 관한 교육, 친환경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환경경영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환경정보 제공, 친환경 구매 관련 공지 및 교육,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 공유,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협력사 유해화학물질 정보 관리 지원 등의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2.3 기업은 녹색매장, 친환경소비 캠페인 등을 통해 친환경 생산 및 소비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제품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친환경 소비문화 기반 조성 기업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및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와 더불어 포장재를 없애거나 최소화한 매장, 비포장 소분판매 등 친환경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소비자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新경제체제와의 연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친환경 제품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구독서비스와 같은 新경제체제와 연계하여 친환경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기업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친환경 제품의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구매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친환경 구매의 의의 '친환경 구매'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항의 녹색제품(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그 밖에 친환경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으로 친환경 원·부자재 및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친환경 구매는 시장 내 친환경 제품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친환경 제품(서비스) 사용단계에서의 환경영향 저감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친환경 구매 지침 기업은 친환경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구매 지침에는 친환경 구매대상 제품에 대한 기준, 범위, 책임과 권한,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업은 '산업계 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사의 친환경 구매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친환경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친환경 사업장

3.1 기업은 자사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생산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 및 실행하는 친환경 사업장을 구현하여야 한다.

친환경 생산의 필요성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은 기업의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미래에 이용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부자재, 수자원, 에너지 등 생산·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사용의 효율을 도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친환경 사업장 구현 기업은 생산·제조공정에 투입된 자원과 배출되는 물질의 양을 파악하고,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생산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은 생산공정의 작업조건과 관리방법 개선, 친환경 신규 설비 도입,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기존의 공정설비 교체 등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자원 절감 및 환경 관련 비용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익을 기업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3.2 기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사용량 저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산림의 탄소흡수원 유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정의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물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명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6가지를 일컫는다.

온실가스 배출 구분 온실가스 배출의 구분은 배출원에 따라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1),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3)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보일러, 운송수단 등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1)과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으나 기업이 전기, 스팀, 열 등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이 있다. 그리고 Scope1과 Scope2 이외의 배출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3)로 구분한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기업은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확인하고 배출책임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요 온실가스(Scope1, Scope2)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 기록, 보고하고, 나아가 조직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Scope 3)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공급망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이용 및 관리 기업은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뿐 아니라 에너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및 화석에너지 절감 활동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기존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 도입, 건물 단열 강화, 연비 개선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하여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대신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기술개발 및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까지 기업은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함으로써, 전 세계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RE100 선언을 통해 저탄소 신시장을 확대하며 선제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는 바, 글로벌 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부록 1> 참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형 RE100(K-RE100) 이행 수단을 구축하였으며,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조달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부록 2> 참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 활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에너지신산업, 이산화탄소 포집·전환·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산림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진하거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 기업은 원·부자재, 용수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업장을 구축하여 자연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 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원자재, 수자원과 같은 자연자원은 종류와 양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부자재, 용수 등의 자원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은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업은 완제품의 자원사용량을 고려하고, 사용하는 자재를 재생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의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거나, 절수기 설치와 같이 자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신규 설비 혹은 청정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순환형(Closed-loop System) 사업장 구축 생산과정에서 원자재, 수자원 등의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는 자원 이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에서 폐기로 이어지던 일방적인 자원 흐름을 최종처리 이전에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순환형 사업장을 구축함으로써 자원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원·부자재 및 용수 재활용 설비 도입 원·부자재 등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재활용(recycling), 재사용(reuse) 및 자원재생(reclaiming)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을 사업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용수 재사용률은 이용하는 수자원에 대한 효율성의 척도로서 용수 재사용량이 증가하면 용수의 취수량과 배출되는 폐수의 양을 저감할 수 있고 제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성과 환경성이 확보되는 경우, 중수도 설비 등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4 기업은 생산활동의 부산물로 인한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오염원, 배출원 등을 확인하고, 생산·제조공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규에서 명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배출에서 최종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다양한 개선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나아가 자체 내부 관리기준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이 대기, 수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기업은 사업활동에 따른 폐기물 및 폐수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및 폐수 적법 처리 기업은 자원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기 이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폐기물 및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에서 운반 및 최종처분까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3.6 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관련 법규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저감하며,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기업은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용도, 위해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명시하여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이 기재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 실시간 화학물질 관리시스템(R-CMS)과 같은 사내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규제 위험 화학물질 관련하여 기업은 화학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EU REACH(화학물질관리제도),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와 같은 화학물질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부록 3> 참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및 관리 필요성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뜻한다. 제품 생산 혹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고유의 유해성(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과 위해성(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을 지니고 있어 사용, 수송, 저장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수송, 저장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이용 및 배출 저감 근본적으로 기업은 국내법 및 국제조약에 규정된 취급제한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저독성 원·부재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안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 개선, 공정 관리 등의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화학물질 사고나 우발적 사건과 같은 잠재적인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이에 대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사고 대응 체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기업은 이를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 발생가능한 사고 유형 및 상황 구분
-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 계획·절차 수립
-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등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역할 명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기업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하여 상해, 재물 손괴,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에 힘쓰고, 오염지역 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같은 사후 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성과관리

4.1 기업은 친환경 생산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등의 자원사용량과 생산공정 및 최종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수, 환경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기업은 투입자원의 사용량과 최종단계에서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포함한 환경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부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에 대한 투입량, 발생량(물질수지, mass balance)을 분석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물질의 법적 허용기준 대비 엄격한 사내기준 설정
- 용수 사용량, 에너지 소비량, 폐기물 배출량,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등 환경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검증을 통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 확인, 배출책임의 범위 설정, 주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모니터링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환경개선에 대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포함한 사용량, 배출량 등의 환경성과 데이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생산활동·친환경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4.2 기업은 환경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성과평가의 의의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는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 지표 선정, 환경경영 활동 성과에 대한 측정, 분석 및 평가, 경영자 보고와 의사소통까지의 일련의 활동을 포괄한다. 이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개선절차이다.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환경경영 수행에 있어 중요한 관리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산업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목적에 적합한 환경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환경경영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과 관리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을 기업의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은 객관적인 환경성과 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경영 실행계획의 이행수준,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법규 및 규제 준수 등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환경성과평가 고려사항 기업의 환경성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 생산방식, 판매시장 등에서 기업 간 차이가 있으므로 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성과와 더불어 경영성과를 함께 제고할 수 있는 환경성과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성과평가 목적 혹은 결과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환경성과에 대한 접근방법과 범위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성과평가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변화된 환경여건과 이슈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환경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기업은 환경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기준과 지침을 수립하고, 환경심사 목적에 따른 내부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내부환경심사의 의의 내부환경심사는 환경경영체제의 운영 실태 및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내부환경심사는 기업의 환경성과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환경 위험을 식별하여 이를 경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부환경심사 요건 기업의 효과적인 환경경영 활동 관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부심사 수행을 위한 심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심사원은 독립성, 전문성, 적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업은 심사에 필요한 적절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내부심사는 환경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내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 심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내부환경심사는 환경경영체제의 운영 상태를 심사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내부심사를 계획된 주기에 따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내부 심사원은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전년도 심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사내 환경안전 관련 규정 준수 현황, 환경시설 점검, 환경경영 매뉴얼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4.4 기업의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환경심사 결과는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환경심사의 활용 환경경영은 기업 전체의 전략과 연계될 뿐 아니라 생산, 재무, 마케팅 등과 같은 기능적 전략과도 대응 관계에 있다. 환경성과 관리는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환경성과 개선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특정 영역에서가 아니라 여러 수준의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결과는 의사결정자에게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환경성과 관리 및 평가, 내부심사 결과 드러난 부적합 사항의 조치뿐 아니라 원인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성과 등의 비재무적 변수를 기업전체의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보고 기업은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결과를 관련 책임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를 포함한 기업의 의사결정 조직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해당 의사결정 조직은 환경성과평가, 환경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환경목표 및 계획, 환경경영체계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후개선 및 사전예방 조치 환경성과평가, 내부심사를 통해 환경목표 또는 환경경영 실행계획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부적합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 환경성과평가 및 내부심사 결과가 환경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포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일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사회에서 환경성과 평가 시 내부성과평가시스템과 연계된 환경성과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5

환경회계

5.1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원가 및 편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지속가능성회계 프레임과 연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환경회계의 정의 및 필요성 환경회계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원가와 편익을 인식하고 측정 및 배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환경경영 활동이 기업의 환경비용, 경제적 수익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환경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 및 개선활동에 대한 정량적 성과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과 환경적 책임이 기업 경영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면서 주주, 투자자, 채권자, 정부, 소비자,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환경성과 및 환경회계 정보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환경회계 운영 및 활용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에 사용된 자원인 환경원가를 측정하고, 유무형의 환경 효익을 파악하여 환경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회계 정보를 작성할 때에는 이슈 발생가능성과 재무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용의 충실성, 정보의 유용성 및 중립성, 명료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환경회계를 통해 내부 의사결정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 환경회계 정보를 환경 관련 투자계획과 같은 내부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환경성과 정보와 연계하는 등 기업의 다른 경영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5.2 기업은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의 기후변화 정책 대응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탄소 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 의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탄소가격(Carbon Pricing)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탄소가격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탄소세(Carbon Tax), 배출권거래제(ETS), 크레딧(Crediting) 메커니즘, RBCF(Results-Based Climate Finance),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으로 구분된다. (<부록 4> 참고) 기업은 내외부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탄소가격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내부탄소가격 도입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한 기업은 탄소가격을 내재화하여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기후변화 정책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관련 전략적 의사결정에 내부탄소가격을 활용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6

생태계 보전

6.1 생태계는 깨끗한 물과 공기, 식량안보와 인간 건강의 근간이 되며, 생물다양성은 생태계뿐 아니라 동식물의 생존,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산림자원, 수자원, 생물자원, 해양자원 등의 원천이 되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연자원 관리 기업은 생산활동에서 산림자원, 수자원, 생물자원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며, 특정 자원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 자원에 대한 자원의존성이 결정되고 관련 위험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기업은 산림자원, 수자원 등 자원 이용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평가하고, 해당 자원에 대한 관리 활동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의 자원 사용에 따른 영향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위험 요소뿐 아니라 자원 이용에 따른 지역사회의 잠재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하며,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장 내외부로 지정된 보호구역과 그 외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모두를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업의 활동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멸종위기 동식물의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종(species)에 대한 보호 조치
-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및 그에 따른 생물자원 보호 활동
-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등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환경경영 전략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높거나 특별히 보호·관리되는 구역, 멸종위기 동식물에 위협이 되는 요인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생태계 다양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기업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탄소흡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 폐기물, 남획, 불법어획, 혼획, 조업에 사용된 후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어망, 원유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특히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과 같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양으로 유입되어 물리적 마모, 분해과정을 거쳐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먹이사슬을 통해 다양한 개체로 전이되고 축적되며 해양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식량과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⑤ 이해관계자 소통

1

이해관계자 설정

1.1 기업은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환경경영 이행을 위한 주요한 이해관계자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는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규명함으로써 이로부터 비롯된 기업의 준수 의무사항과 주요한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경영 이해관계자 식별 기업은 재무적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 주요한 이해관계자도 고려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환경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경영 활동 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

2.1 기업은 환경경영에 대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 접근성을 높이고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사소통의 필요성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며,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업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 기업의 투명성 확보, 이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트렌드 파악을 통해 해외사업 발굴 등 신규 사업 기회를 확보하여 친환경 기업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주기적 의사소통 기업은 주기적 의사소통을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과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의 관련성 및 중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사항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관계자 참여도 제고 기업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고,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 운영 주기,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회의, 컨퍼런스, 워크숍, 공청회, 세미나, 자문 위원회, 인터뷰, 단체교섭, 웹 기반의 포럼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다.

2.2 기업은 위험과 기회 요인 분석에 따른 국내외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환경 관련 국내외 이니셔티브 자발적 참여 기업은 환경적 중요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국내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보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 및 국내외 관련 모범규준이나 행동강령을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부록 5〉 참고)

3

환경정보 공개

3.1 기업은 환경경영 활동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및 환경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정보 공개의 필요성 환경경영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는 내부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른 효용을 극대화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또한 투자자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경계, 대상기간 및 주기 기업은 자발적인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환경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이때 기업은 환경정보의 보고경계를 국내 혹은 국내외 전 사업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고대상기간을 1년 이하로 두고, 연간 혹은 분기별로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시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보고 채널 기업의 환경경영 성과 및 이슈를 포함한 중요 정보는 불특정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공개 채널(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3.2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체계를 결정하고, 작성하는 환경정보가 명확성, 비교가능성, 일관성, 신뢰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 정보의 결정 기업은 환경경영 관련 공개 내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자인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과 관심사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환경심사에서 외부심사(제3자 검증)는 환경경영의 장단점에 대한 독립된 인증 및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경영진에게 환경경영 실행의 장단점에 대한 독립된 인증 및 분석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경영 관리, 계획,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인다.

공개 정보의 내용 기업은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을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경영 활동과 주요 항목 및 성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환경경영 관련 정보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 환경경영 성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환경경영 관련 거버넌스 체계(이사회, 전사적 의사결정조직)
- 환경경영 방침,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
- 환경경영 실무조직 및 기업문화
- 회사의 환경경영 위험·기회 요인, 위험 요소 식별·평가·관리체계
- 환경법규 위반 및 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구매·판매 실적, 친환경 공급망 관리
- 사업장의 주요 환경성과 지표 및 데이터
- 환경성과평가시스템 및 내부환경심사 체계, 환경회계시스템 운영
-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
- 기업이 파악한 이해관계자, 소통 및 대응 활동 등

특히 환경법규를 위반한 내역이나 사고의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정보의 시의성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즉시(혹은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 정보의 요건 기업은 공개되는 정보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명확성: 환경정보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 비교가능성: 환경정보의 보고기준 및 범위는 섹터, 산업 또는 포트폴리오 내의 조직 간의 비교 또는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일관성: 환경정보의 보고대상 및 범위, 보고기간, 보고빈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
- 신뢰성: 기업이 작성한 환경정보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객관적,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환경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은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부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6 부록

부록 1 RE100

1. RE100 개요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 등 전기 소비 주체가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조달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2. 가입 목적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임

3. 가입 요건

RE100 회원은 글로벌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을 포함하여 IT, 금융 서비스, 제약, 자동차 생산 등의 섹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과 투자자들 또한 zero-emissions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

이를 위하여, 캠페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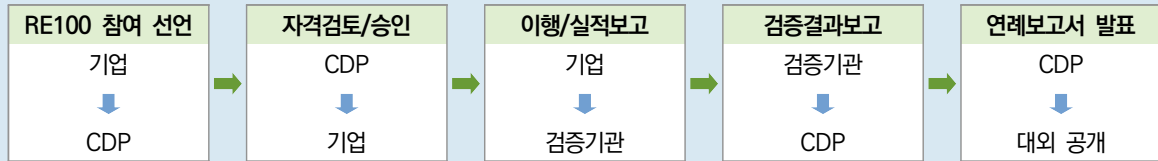
- 첫째,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영향력 있는 기업(influential)’으로 인정되어야 함
 -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
 - 주요 다국적기업(포춘 선정 1,000대 기업 또는 동급)
 - 상당한 전력 사용량(예시; 0.1TWh/ 100GWh/ 100,000MWh초과)
 - RE100 목적에 도움이 되는 전 세계 또는 국내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기타 특성
- 둘째,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 또는,
 - 100% 달성을 위한 명확한 전략과 일정 수립 또는,
 - 이니셔티브 가입 후 12개월 내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작성
- 셋째, 모든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100%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일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만족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함
 - 2050년까지 100%, 최소한 중간 단계로는,
 -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 넷째, RE100가입 기업은 매년 보고 스프레드시트(CDP 질문지 보고 기능)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략과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함

- 최소한 전력 총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총 사용량 데이터
- 기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요구

4. 추진 절차

RE100은 기업이 선언한 재생에너지 목표 및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검증하고 CDP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있음



출처:

- 1) RE100, Annual Report, RE100 Progress and Insights December 2019
- 2) <https://www.there100.org>

부록 2 한국형 RE100(K-RE100)

한국형 RE100(K-RE100)은 전기소비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하여 녹색프리미엄, REC 거래 등의 K-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1. K-RE100 참여대상

-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

2.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

-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글로벌 RE100캠페인 기준과 동일)

3. K-RE100 이행 수단

녹색프리미엄	한국전력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하여 기업이 한전에 추가 요금(녹색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
인증서(REC) 구매	기업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직접 구매
제3자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기업이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를 함께 구매
지분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자체건설	자가발전. 전기소비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business/policy_re100.aspx)

부록 3 화학물질 법규 대응 관련 사이트 목록

기업은 화평법, 화관법 등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규에 대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음

1. KCMA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
2.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s://ncis.nier.go.kr/main.do>)
 - 산업체의 화평법, 화관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기본정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시험자료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3. 화평법/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평법, 화관법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서비스 제공
4.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main.do>)
 - 화관법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 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기관, 국민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포털
5.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 화평법에 관한 법적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환경부 시스템
5. K-CHESAR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
(<http://kchesar.kcma.or.kr/main/main.asp>)
 -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자료'의 작성을 지원
6. 안전보건공단-화학물질정보(<http://msds.kosha.or.kr/>)
 - MSDS 작성 및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화학물질정보 검색 사이트

부록 4 탄소가격의 5가지 유형

아래 5가지 유형 중 기업은 내외부 환경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탄소가격을 선택 및 도입할 수 있음

구분	상세
탄소세(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부과를 통해 청정에너지 사용 전환 인센티브를 부여(가격 고정, 감축량 불확실성 존재)
배출권거래제(ETS)	특정 부문에서의 총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달성(감축량 고정, 가격 불확실성 존재)
크레딧(Crediting) 메커니즘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생한 배출량 감축분을 제3자검증을 거쳐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
RBCF(Results-Based Climate Finance)	사전에 설정된 감축목표를 달성(제3자검증 필요)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는 구조로 RBCF를 통해 민간부문 탄소시장 활성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	정부나 기업 등이 탄소사용에 자체 내부가격을 설정 및 반영하여 저탄소 기술에 투자를 촉진하고 미래의 기후 정책과 규제를 대비

출처: Carbon Pricing Leadership Coalition 홈페이지, 탄소가격제 현황 및 최근 동향(2020, KDB미래전략연구소-유지혜)에서 재인용

부록 5 환경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이니셔티브

아래 표는 국내외 주요 환경 이니셔티브 또는 환경 관련 캠페인이나 협약의 예시로, 이 밖에도 다양한 환경 이니셔티브가 존재함

특히, 금융 및 투자기관의 경우, CDP 및 TCFD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배출과 관련된 기업의 주요 정보에 기초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때 기업은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주주들이 기후변화가 기업의 미래가치에 미칠 투자 위험과 기회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탄소정보를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니셔티브	내용
BNBP(Biz N Biodiversity Platform,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기업/산업계의 인식제고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limate Change, Water, Forest, Supply Chain, Cities, Carbon Action	기후변화, 물, 생물다양성 관련 기업정보 공개 요청
EV100(Electric Vehicle 100%)	2030년까지 기업이 자발적으로 운영이나 제품 유통을 위한 차량을 휘발유나 디젤에서 전기차로 100%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Getting to Zero 2030 Coalition(탄소배출 제로 연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목표(제로배출선박을 2030년까지 사용화) 달성을 위한 전세계 해운산업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NPEGC(New Plastics Economy Global Commitment, 새로운 플라스틱 경제 글로벌 공약)	2025년까지 100% 재사용·재활용·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약속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C(Responsible Care)	화학산업의 이미지 제고, 환경/안전 사고 예방,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발적 환경/안전/보건 개선 활동
RE100(Renewable Energy 100%)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캠페인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재무정보 전담협의체)	기후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권고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UNEP FI(유엔 환경 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지속가능발전 관련 금융기관의 자발적 모임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고농도 계절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 환경부의 자발적 협약

7 참고문헌

1. CDP, 2021, CDP Questionnaire(Climature Change/Water/Forest)
2. GRI, 2016, GRI Standards
3. ISO, 2015, ISO14001
4. RE100, 2017, “ Annual Report, RE100 Progress and Insights”
5. S&P Global, 2021, CSA Companion 2021
6. TCFD, 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7. TCFD, 2017,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8. WEF, 2019, “How to set up effective climate governance on Corporate Boards”
9. 대기환경보전법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11. 물환경보전법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5. 온실가스 프로토콜 -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7. 폐기물관리법
18. 화학물질관리법
1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2020,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1. KDB미래전략연구소, 2020, 탄소가격제 현황 및 최근 동향



사회 모범기준

① 전문	40
② 리더십과 거버넌스	42
③ 비재무 위험 관리	47
④ 운영 및 성과	51
⑤ 이해관계자 소통	63
⑥ 부록	65
⑦ 참고문헌	76

1 전문

● 사회 모범규준의 제정 배경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조와 기업의 글로벌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화된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책임은 더 이상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ISO 26000이나 SRI(사회책임투자) 관련 지표들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여 기업 경영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일관된 논의나 방향 제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은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모범규준을 제정한다.

● 사회 모범규준의 제정 목적

본 모범규준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 및 기준 등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모범규준 제정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사회책임기업의 모범규준을 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장기 가치를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 모범규준의 내용과 구성

본 모범규준은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사회책임경영에 부합하는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보다 미래지향적인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모범규준은 전문, 리더십과 거버넌스, 비재무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부록 등 네 부문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 모범기준의 적용

모범기준은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공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업의 환경은 기업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사회책임경영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본 모범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사회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적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모범기준도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 모범기준의 개정 배경

지난 2010년에 제정되어 발표된 사회 모범기준은 그동안 국내 상장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개선을 선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국제적으로 사회책임 이슈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관련 정보가 확대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인권, 공정한 거래 및 경쟁, 안전 등을 중심으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적 관련 지수들이 우리 기업의 바람직한 사회책임경영을 유도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모범기준은 우선 포괄적인 비재무 위험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과거 기업은 재무적 위험만을 중시하고 집중하였으나,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는 비재무적 위험 또한 기업 가치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기업은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혹은 당면할 비재무적 위험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 모범기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이해관계자 중심의 분류를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개편한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리더십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비재무 위험관리 등을 신설하고, 사회책임경영의 핵심 이슈를 재편하였다. 이는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 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로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뒤야 할 이슈들이다. 특히 협력사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사회책임경영을 위험 관리 차원을 넘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활용을 기대한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재무정보 표준화가 보다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모범기준도 관련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② 리더십과 거버넌스

1

리더십

1.1 최고경영진은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인식 최고경영진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의 첫 걸음이다. 사회책임경영의 실행을 위해 최고경영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태도, 관여 수준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의 이해 필요성 최고경영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는 사회책임경영을 실행하고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 최고경영진의 리더십 발휘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뿐 아니라 임직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문화로 통합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따라서 리더십은 사회책임경영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1.2 최고경영진은 사회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의 의미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거버넌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의미한다.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는 공식적 메커니즘과 비공식적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공식적 메커니즘은 전략, 의사결정 체계 및 기구와 같은 합의된 구조와 절차를 기반으로 한다. 비공식적 메커니즘은 기업의 문화, 가치와 같이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는 기업의 크기, 유형 및 각 기업이 처한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의 중요성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는 기업이 자신의 결정과 활동의 영향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기업 내외부 관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핵심 조건이며, 기업의 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법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책임경영의 원칙을 의사결정 및 이행 체계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는 책임성,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존중, 법규 준수, 국제행동규범 준수, 인권 존중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핵심 이슈(Ⅲ. 운영 및 성과 참고)와 관련 관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기업이 목표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통찰, 구조, 문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등과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2

전략과 방침

2.1 기업은 효과적인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 전략에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책임경영과 전략의 연계 필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사의 의사결정과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실제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핵심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시키고, 경영활동과 사회책임경영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산업> 참고

사회책임경영과 사업 전략 통합의 필요성 효과적인 사회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기업 전략과 방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내부 시스템, 정책, 절차, 의사결정에 통합하여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파악 기업은 사회책임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에는 임직원, 주주, 고객뿐 아니라 협력사,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기업과 주요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주요 이해관계자에서 배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소통의 필요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예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전략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2.2 기업은 해당 기업의 사업과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업 전략 내 사회책임경영의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책임경영과 전략의 통합 방안 기업은 사회책임경영의 실행이 단기·중기·장기적 측면에 미칠 영향과 창출될 가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은 ICT의 빠른 발전, 인구구성의 변화, 자연환경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식의 전환, 지정학적 영향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해석과 예측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책임경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은 전략과 방침을 수립할 때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회책임경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일정, 역할, 배분,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적 대안의 검토 기업은 전략적 대안을 검토함에 있어 각 선택이 가져올 기회와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는 기업 전략과 핵심 가치, 미션, 비전 등과의 부합 여부, 전략과 실행에 필요한 자원의 활용 가능 여부, 실행될 전략의 예상 결과 등이 있다.

중대성 검토 기업은 전략 및 방침 수립 시 이슈별 중대성을 검토한 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핵심 이슈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중대성'에 대한 정의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인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으로 간주된다.

2.3 기업은 사회책임경영 전략을 반영한 사업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활동의 성과 측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 외에도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급망과 지역사회에 자사가 발생시킨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주주,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성과 측정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사업 모델,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 영향 측정 방법론> 참고

3

조직과 의사결정

3.1 사회책임경영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조직의 관여가 필요하다.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구이다. 최고경영진 혹은 사회책임경영 의사결정 조직은 사회책임경영 전략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조직의 역할 모든 기업은 고유의 의사결정 절차와 구조를 가진다. 기업에 따라 공식적인 사규인 경우도 있으며, 해당 기업의 문화와 가치에 따른 비공식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유형을 떠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조직에 사회책임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3.2 기업은 사회적 책임 원칙과 관행을 실행할 수 있는 절차, 시스템, 구조,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사회책임경영 의사결정 조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책임경영 의사결정 조직의 실효성 확보 이를 위해 해당 의사결정 조직은 아래의 사항들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전략, 목표, 지표 수립
- 사회책임경영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 정립
- 기업 자원(재무적, 비재무적)의 효율적 사용
- 사회책임경영 성과와 연계된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 시스템 제안
-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의 요구사항 조정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절차 수립 및 문제 해결 관여
- 의사결정 이행의 사회책임경영 원칙 준수 여부, 긍정적/부정적 영향 점검

4

기업 문화

4.1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반영된 기업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책임경영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기업 문화의 정의 기업 문화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그것이 투영된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기업의 구성원들은 기업 문화를 통해 소속 기업과 동질감을 갖는 동시에 다른 기업과 구별하기도 한다.

기업 문화의 중요성 기업 문화는 사회책임경영의 충실한 이행과 장기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업의 장기 전략과 발맞추어 기업의 목표 달성 및 차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성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기업문화는 사회책임경영 전략과 사업을 통합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업 문화의 역할 기업 문화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기업의 장기 전략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책임경영을 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책임경영이 장기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2 최고경영진은 각 기업의 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기업 문화를 형성해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 기업 문화를 정의하고 형성하는 것은 최고경영진의 책임이다. 모든 기업에게 통용되는 기업 문화는 없으며, 기업은 각자의 전략, 사업 환경, 배경을 고려하여 자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최고경영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미션, 비전, 핵심가치에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결정과 활동이 축적된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기업 문화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기업 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무형의 가치이므로 이를 변화시키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기업 문화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및 모니터링 이사회는 기업 문화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 다음의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 1) 기업 문화와 장기 전략 간의 부합 여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업 문화와 장기 전략 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 간 부합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 2)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요인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제거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최고경영진과 함께 바람직한 기업 문화에 대한 공동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세대와 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유연한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 이 과정에는 기업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도 포함하여야 한다.
- 4) 부서 및 직원의 성과평가 체계 내 지속가능전략 목표와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③ 비재무 위험 관리

1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

1.1 이사회는 재무 위험과 비재무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경영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 비재무 이슈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재무 위험을 고려한 책임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비재무 위험요소가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1.2 이사회는 재무 위험뿐 아니라 비재무 위험도 충실히 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감독 의무 이사회는 기업의 위험 관리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과 협력하여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 위험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1.3 기업은 비재무 위험을 전사적 위험관리체계(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전사적 위험관리체계로의 통합 기업이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관리체계가 비재무 위험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재무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또는 프로세스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재무 위험을 재무 위험과 혼동하여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비재무 위험과 기회의 인식

2.1 기업은 비재무 이슈를 식별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비재무 위험과 기회의 파악 기업은 내외부 환경을 검토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의 내외부 환경 검토 시에는 기업 전반에 걸쳐 규제, 평판, 공급망, 인적자본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이 비재무 이슈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시:

- 메가 트렌드 분석
- 이해관계자 참여
- 중요성 평가
- 미디어 모니터링
- 규제 변화 모니터링
- 공급망 실사

a. 위험 요인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 가능한 위험의 예는 아래와 같다.

유형	내용	사례
공급망 위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전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 공급업체 인권 침해(근로자 안전사고, 임금 미지급 등) 발생 • 제품 및 서비스 납품 불가 사태 발생 등
평판 위험	기업 평판 악화로 발생하는 위험	•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활동·제품·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매운동 촉발 • 기업 핵심 가치와 모순되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규제 위험	규제 변화에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하는 위험	• 규제 미준수로 발생하는 제재, 벌금 등 • 글로벌 규제 미준수로 인한 사업영역 확장 불가 등
소송 위험	소송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에 관한 위험	• 사회적 책임 미흡으로 인한 정부, 공공기관,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및 소송 발생
인적 위험	인적 자원과 관련된 위험	• 업무 만족도 및 몰입도 저하 • 이직으로 인한 핵심인재 이탈

b. 기획 요인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 가능한 기획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유형	내용	사례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사업 모델 구축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개발 등
신규 고객 확보	사회·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 조달, 제품 생산 과정에 사회적 책임 이행 (공정무역, 적정임금 지급 등) 친환경 포장, 동물복지 인증 제품 출시 등
규제 비용 절감 및 지원금 확보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여 규제 비용 발생가능성을 감소하게 하고 정부지원 등의 부수적 효과 기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매출 증대 장애인의무고용 초과 달성을 통한 정부 지원금 획득 등
운영 효율화	자원 효율화로 운영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부산물 재자원화 지역사회 원재료 수급을 통한 유통 비용 절감
우수 인재 유치	지속가능한 기업문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및 생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복지, 역량개발 지원 등 근로조건 개선과 적정 임금 지급, 근로자 권리 보호 등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

2.2 기업이 파악한 비재무 이슈 중 위험요인은 발생가능성, 영향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응하고, 기획요인은 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해 전략에 반영한다.

위험 요인

기업은 비재무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기업마다 중요한 비재무 위험은 상이할 수 있으며,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기획 요인

기획 요인은 기업의 사업,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해당 기획 요인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전략에 반영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②리더십과 거버넌스 부분의 2. 전략과 방침 참고).

3

비재무 위험의 대응

3.1 기업은 비재무 위험의 대응 우선순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준별 비재무 위험 대응 기업은 사업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위험 선호도, 비용-편익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재무 위험에 대응하여야 한다. 대응 우선 순위가 높은 위험의 경우 예방책을 마련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한편 대응 우선 순위가 중간이거나 낮은 경우, 해당 위험을 수용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만을 실시할 수도 있다.

3.2 기업은 비재무 위험 대응방안이 의도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여야 한다.

비재무 위험 평가 및 전략 수정 비재무 위험 대응방향 수립 시 기업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기업의 수용가능치를 초과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용가능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거나 방향을 수정하여야 한다.

3.3 기업은 주요 비재무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체계와 대응방안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비재무 위험을 관장하는 의사결정기구
- 비재무 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 목표
- 주요 비재무 위험, 대응책 및 성과

비재무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的方法是 후술하는 ⑤이해관계자 소통의 2. 신뢰 증진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4 운영 및 성과

1

인권

1.1 최고경영진은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진 의지 표명 최고경영진은 기업 내부의 다양한 조직이 인권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의지를 표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의지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1.2 기업은 인권 이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인권 정책 수립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이슈가 고려될 수 있도록 인권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기업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의 의견,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인권과 관련된 국내 법률 및 제도,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 기업의 인권 정책은 자사 근로자 외에도 협력사 및 파트너사의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거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원칙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 기준과 더불어 자사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인권 이슈를 포함하여야 한다.

▶ <부록 3: 인권 위험의 범위> 참고

1.3 기업은 인권 이슈를 전담하는 실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권 관련 실무부서 구축 기업이 인권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인권과 관련된 기존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4 기업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는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인권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전 과정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 내 주요한 인권 이슈와 이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결과는 이해관계자 인권의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업은 부정적 인권 이슈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도 자사의 사업장 혹은 제품 및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거나 인권 이슈가 발생한 이해관계자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부정적 인권 이슈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자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사 등 인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제적인 인권영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과 이해관계자의 인권경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록 4: 인권영향평가 방법론〉 참고

1.5 기업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예방 및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인권 위험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인권 위험 관리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위험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관련 사업 활동 및 담당부서 업무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 위험 해소 및 완화를 관리하는 담당자 혹은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1.6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인권과 관련된 고충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권 관련 고충처리채널 운영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인권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고충처리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기업은 고충처리채널에 접수된 의견을 분석해 인권경영 시행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고충처리채널은 자사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7 기업은 인권경영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인권경영 효과성 관리 기업은 인권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평가지표 측정은 인권경영의 체계가 효과적으로 설계된 것인지 점검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인권경영의 목표 및 계획과 연계된 정성·정량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경영 평가지표는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권경영 현황 공개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인권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경영 관련 정책과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권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증진할 수 있다.

▶ 〈부록 5: 인권경영보고서〉 참고

2

노동관행

2.1 기업은 다양성을 고려하여 고용을 증진하고 유치한 인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정한 고용과 차별없는 급여 기업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연령, 인종, 출신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청년,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고려한 적극적인 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관리 지표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성별 임금 비율, 직급별 남성 및 여성 비율, 임시직 비율, 이직률 등을 설정하고 관리 및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성별 및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동일임금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인 성과평가와 보수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보수체계는 임금근로자 평균임금, 생활비, 사회보장 급여를 비롯한 이전소득 등을 반영하여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기업은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노사 간 성실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노동기본권 보장 기업은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가 자신들의 이익 보호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거나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기업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조직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어떠한 위협이나 보복 없이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노사 양측은 두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다양하고 다면적인 교섭, 협의, 정보교환 등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해와 신뢰, 호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노사간 대화는 노사협의회, 산업별 협의체 또는 국가 단위의 노사정 협의체 및 산업별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기업 수준의 정보 및 협의기구 역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고 적합한 처리 절차와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관련 제도는 <부록 6: 공평·공정한 고용>, <부록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참고

2.3 기업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근로자 역량개발 및 지원 기업은 근로자에게 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자율성, 창의성, 책임감을 기반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과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정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개발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역량개발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근로자 역량개발을 지원할 때 성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제도는 <부록 8: 차별없고 공정한 기회> 참고

2.4 기업은 자사 및 협력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 기업은 근로자의 신체적 안전과 편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정에 최적화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 향상, 생산성 증대 및 근로자의 사기 진작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세우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 성과목표의 수립 및 평가체계와 전담관리체계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 안전보건 관련 인력 또는 조직을 배치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근로자 및 협력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산업 재해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행사한 권리에 대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주지 않아야 하고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를 근로자의 비용으로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보건시스템 기업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 및 보건 위험을 분석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안전사고와 보건 위험 및 근로자가 제기한 문제를 기록하고 조사해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조사·분석 시 성별, 연령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기상황 및 사고에 대한 실태는 철저히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보고, 근로자 대상 대피 절차 마련, 근로자 훈련 시행,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비상구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 발생 시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 기타 안전보건 관련 감사 및 인증은 <부록 9: 안전 관련 감사 및 인증> 참고

안전보건 성과지표 기업은 전 사업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 사업장의 위험·위해 요인을 조사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수급인 포함)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리 지표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등을 설정하고 관리 및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 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 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활동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정량적 목표의 달성도를 경영진의 보상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기업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추고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기업은 업무 방식 변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전염병 및 감염병과

같은 질병 위기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신뢰와 협력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무 성과와 직무 만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시간 노동관행과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 제도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관련 제도는 <부록 10: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참고

3

공정운영관행

3.1 기업은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 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협력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을 포함한 공급망이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립한 전략을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공급망 행동강령 수립 및 지원 기업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기존 정책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은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은 협력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노동관행 및 인권 관련 행위준칙, ILO 노동기준 원칙, 공정거래법 및 상생협력법 등 국내외 법규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공급망이 사회적 책임을 경영 방침으로 삼고 실현할 수 있도록 멘토링, 교육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급망 행동강령 관련 사항은 <부록 11: 공급망 행동강령 및 위험 실사>, <부록 12: 분쟁광물 관리> 참고

공급망 위험 관리 기업은 사업 활동의 공급망 위험을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예방적 차원의 공급망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사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별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식별, 예방, 완화,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대상 공급망의 범위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 2차 이상 협력사, 계약업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각 실사 단계는 1) 기업 정책과 시스템 내 공급망 행동강령 및 안전보건정책 통합, 2)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 영향의 식별과 평가, 3) 부정 영향 예방과 완화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4) 활동 이행사항 점검, 5) 실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공급망 실사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련 사항은 <부록 11: 공급망 행동강령 및 위험 실사> 참고

3.2 기업은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은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 및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하며, 이를 촉진하는 공공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상 지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질서 준수를 위한 협약과 인센티브 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변동하는 가격 남용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다른 기업의 사업 활동 또는 새로운 경쟁 기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쟁 기업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공동행위 금지 기업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시장 분할 및 출고 조절 등의 내용으로 부당하게 공급량을 조절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기업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 경쟁의 정도나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되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 및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가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부록 13: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 <부록 1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고

3.3 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간 상호협력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공정 사회의 경제적 토대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동반성장 기반 확립 기업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해 협력사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을 도입하여 금융지원, 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성장 인프라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 관련 제도는 <부록 15: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고

4

지속가능한 소비

4.1 기업은 소비자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 권익침해 방지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판매·제공 시 불공정한 거래 조건 사용,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제품 및 서비스 결함에 대한 책임 전가 등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뿐 아니라 협력사, 경쟁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사업 특성과 소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공정거래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련 위험 관리에 대해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와의 공정한 거래에 대한 전사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윤리적인 마케팅 실시 소비자의 행동과 특성을 이용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 및 공급망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는 소비자의 자율적, 독립적 구매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소비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 형태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며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소비자 이슈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요구된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6: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위험> 참고

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략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유발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가치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4.2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요인으로부터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가 제조 및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조직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등의 모든 경우에서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외에도 소비자 유형에 따른 제품 안전 이슈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통상적인 소비자와 다르게 아동, 청소년, 여성, 고령층, 장애인, 임산부, 환자 등의 취약 소비자층에 대해서는 소비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안전성 문제는 제품

자체의 결함 외에도 본래 용도, 목적과는 다르게 편의에 따라 오사용 및 남용하는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17: 소비자 안전 제고 사례> 참고

제품 및 서비스 안전성 관리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은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슈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제품의 기획부터 회수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상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보관 및 폐기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운송 과정과 최종 소비자에 따라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제품 및 서비스 안전보건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해 국내외에서 공인된 인증을 획득할 수도 있다.

안전성 평가 결과는 문서화하여 소비자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기업은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장·허위정보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소비자의 오인 혹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중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검토하고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 계층을 파악해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오인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3 기업은 소비자가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 소통 채널 구축 기업은 소비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모든 계층의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제품 및 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이러한 의견이 기업에게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비자 의견 반영 기업은 자사의 사업활동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불만사항을 파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가 마련한 소통채널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각종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외부 채널을 소통채널로 인식하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관부서와 공유하여 사업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 기업은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적극적 피해보상 노력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뢰도가 하락하거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어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공급망 및 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한 모든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나아가 공급망 내 협력사, 정부기관과 협업관계를 구축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관과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피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피해보상 체계 마련 기업은 효과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은 사후 대처와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보상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특히 보상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 결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함이 발생하거나 결함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제품 회수를 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품 결함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소비자와의 소통을 지속하여야 한다.

4.5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파악해 이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품의 속성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부록 18: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 개발 사례> 참고

5

정보 보호

5.1 기업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정보 자산 보호의 중요성 및 위험을 인지하고 경영진의 정보 보안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혹은 경영진 내에 IT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정보 보안 전략에 대한 이해를 가진 구성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기업은 정보 보안 정책과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임직원이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관련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정보 보안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 보안 정책은 통상적인 정보 관리 방침과 더불어 정보의 유출, 손실, 도난 사고 등에 대한 위험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 보안 관리체계는 일반적인 정보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해킹, 재해,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와 테스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상시 관리점검 체계를 수립해 정보 보안의 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및 재원의 확보 기업은 정보 보안 관리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협력사 정보 보호 점검 기업은 협력사의 정보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5.2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기업은 조직 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략 및 사업 완료 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및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과 관계자(시간제 근로자 및 수탁사 직원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침해 위험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하고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에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을 보유한 책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그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위험 관리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수집 및 활용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경우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자발적 동의를 얻은 정보, 사법 당국의 문서 등 적법한 절차로 확보한 정보로 제한한다.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 시 명시된 목적 및 범위 이외의 정보 활용과 공개 및 공유는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업은 보유한 개인정보를 비윤리적 행위에 오용 또는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5.3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기업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해당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투입한 자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아가 기업은 고객 정보 유출, 손실, 도난 사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정보주체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기업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취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와 위험 요소를 이해하기 쉽고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부록 1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참고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6.1 기업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참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 전략 수립 기업과 지역사회는 두 당사자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임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장기적인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요구와 기업의 사업 모델을 연계한 참여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0: 지역의 정의> 참고

6.2 기업은 임직원에게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측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 참여도 제고 기업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전사적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참여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에게 재무적·비재무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참여 성과 관리 기업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과 그 성과를 정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6.3 기업은 국내외 사회책임경영 관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사회책임경영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은 사회책임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산업별, 주제별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혹은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된 원칙을 선언할 수 있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1: 사회책임경영 이니셔티브 사례> 참고

⑤ 이해관계자 소통

1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1.1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필요성 이해관계자 참여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책임경영 이슈를 선별하고 전략 수립 및 활동 성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사회책임경영의 주요한 위험, 기회, 관련 요구 및 기대사항, 전문가 의견,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 이행, 성과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수단으로 고충 처리 프로세스나 온·오프라인 미팅, 컨퍼런스, 설문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내부 이해관계자의 경우 사내 교육, 내부 회의, 사내 게시판 혹은 메신저 등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우 정보공개 채널을 주요한 소통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 운영 주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정기적,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

정보 공개

2.1 기업은 사회책임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책임경영 정보 공개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피드백에 대한 대응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기업은 어떠한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은 정보 공개 시 한국거래소에서 공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에 따라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균형, 검증가능성, 적시성의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가이드스에서 제시하는 중요성(Materiality) 평가를 통해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은 사회책임경영 정보공개와 관련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2: 사회책임경영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참고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 기업의 정보공개 수단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통합보고서, 사업보고서, 사회공헌 백서, 회사의 홈페이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한다. 글로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영문 혹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경영체계의 사회적 책임 수준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개발한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으며, 사업장 안전보건, 제품 안전성, 품질, 정보 보호, 부패방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3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제3자의 객관성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비재무정보 검증과 관련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으로 AA1000AP, AA1000AS, AA1000SES, ISAE3000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3자 검증의견서를 발급받아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⑥ 부록

부록 1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산업

블랙록, 네덜란드 연기금 등 세계적인 규모의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되었거나 배제가 예상되는 산업 리스트를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대표적인 투자 배제 혹은 고려 산업 분야]

- 무기 제조
- 주류, 담배 생산 및 유통
- 분쟁광물의 생산 및 유통
- 팜오일 생산
- 화석연료 생산 및 운송
- 원자력 발전
- 광산업
- 대규모 농업 및 곡물 생산
- 임업
- 화학물질 제조업
- 대규모 건설업
- 수산업 등

[투자 배제 사례]

-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 2020, “Exclusion Policy Robeco”
- Nordea, 2020, “Exclusion List”
- AXA Investment Managers, “Exclusion Policies”,
<https://www.axa-im.com/responsible-investing/sector-investment-guidelines>
- Aegon, 2020, “Aegon N.V. Responsible Investment Policy 2020”
- Pensiondanmark, “Exclusion List”,
<https://www.pensiondanmark.com/en/investments/exclusion-list/>

부록 2 영향 측정 방법론

기업은 사업활동을 통해 주주, 근로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기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함께 측정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같이 비재무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 지표는 회사의 사업 모델과 전략 및 목표,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은 아래 방법론과 사례를 참고해 보다 객관적인 지표 측정 방법론을 마련할 수 있다.

[영향 측정 방법론]

-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Impact Toolkit”, <https://url.kr/YFZ1hR>
- PWC, 2013, “Measuring and managing total impact: A new language for business decisions”
- IAIA, 2015, “Social Impact Assessment Guidance”
-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2017,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 측정 매뉴얼”

[사례]

- Soneva, To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https://soneva.com/sustainability-reports%e2%80%8b>
- Standard Chartered, Impact Report, <https://www.sc.com/en/sustainability/our-impact/>
- Kering, Environmental Profit & Loss, <https://www.kering.com/en/sustainability/environmental-profit-loss/methodology/>

부록 3 인권 위험의 범위

기업의 주요 인권 위험은 사업 분야, 사업활동 지역, 주된 이해관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업종이나 이해관계자 별 주요 인권 위험을 명시하고 있다.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
- UNEP Finance Initiative, “Human Rights Issues by Sector”, <https://www.unepfi.org/humanrightstoolkit/agriculture.php>
- UN PRI, 2018, “Digging Deeper: Human Rights and the Extractives Sector”
- GSMA, 2020, “Human Rights Guidance for the Mobile Industry”
- Knowthechain, 2020, “Food & Beverage Benchmark Findings Report”
- Knowthechain, 2020,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Benchmark Findings Report”
- Knowthechain, 2020, “Apparel & Footwear Benchmark Findings Report”

부록 4 인권영향평가 방법론

국내외 인권 관련 이니셔티브 및 기관은 UN에서 발간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근간으로 다양한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을 위한 인권경영 설명서 및 연구자료가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각종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참고하여 국내 기조와 현황에 부합하는 인권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래는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헌이다.

- UNEP Finance Initiative, “Human Rights Issues by Sector”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 국가인권위원회,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인권경영 개발 연구”
- UNHCR,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IFC, UNGC, IBLF, 2010,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부록 5 인권경영보고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인권경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도 인권경영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여 인권 정책에 따라 수립한 목표의 달성정도 등의 인권경영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인권경영보고서에는 주요 인권 이슈, 현재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잠재적인 이슈에 대한 견해, 수립한 전략, 프레임워크, 연도별 인권경영 이행 성과, 국제인권 가이드라인 요구사항과의 연계 등 이해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아래는 다국적 기업이 발간한 인권경영보고서 참고자료이다.

- Unilever, 2020, “Human Rights report”
- Microsoft, 2019, “Human Rights Annual Report”
-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2019, “HUMAN RIGHTS PROGRESS REPORT”
- Nestle, 2019, “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 Index of Answers 2019”
- Thaioil Public Company Limited, 2019, “Human Rights Due Diligence Process an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Management (HRIAM) Report 2019”
- The Coca-Cola Company, 2016-2017, “HUMAN RIGHTS REPORT”

부록 6 공평·공정한 고용

기업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용노동부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공평하고 공정하게 고용하여야 한다. 주요 대상자는 청년층,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 외국인이 해당되며 관련분야에는 취업지원, 일자리창출, 고용안정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개선, 노동시간단축, 안심일터, 노사관계가 포함된다.

[고용 관련 법·제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05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89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 고용노동부, 2020,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2020,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2020, “고용형태공시제도”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19.do>
- 고용노동부, 2020, “분야별정책”,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upport/list.do>

부록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시행되었다. 해당 시행령의 목적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악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 고용노동부, 201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 고용노동부, 2019,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 201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부록 8 차별없고 공정한 기회

기업은 근로자 교육, 훈련, 성과평가 등에서 남성·여성,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성별, 혼인 여부, 임신 및 출산, 장애, 고용형태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 동등한 경력사다리와 승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성별에 의한 직급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교육, 훈련,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외국인 및 장애인 근로자와 같은 취약집단에게 적극적인 보호와 배려를 제공하여 개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평등 및 고용 관련 법·가이드라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89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26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05호
- 고용노동부, 2020,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2020,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부록 9 안전 관련 감사 및 인증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ISO45001)을 취득할 수 있다. ISO45001을 취득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이해관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부록 10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기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 일·생활 균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장소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임신, 출산, 양육, 가족돌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복지 지원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정책과 제도의 유형으로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근로 금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 휴게실과 수유시설, 임신부 지원 프로그램,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 직장 내 어린이집, 가족돌봄 휴직 등이 있다. 기업은 가족친화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할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일·생활 양립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부록 11 공급망 행동강령 및 위험 실사

기업은 공급망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외부 환경영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공급망 행동강령은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 및 공정거래, 환경 정책, 검토 및 문서화 방법을 포함한다.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공급망 행동강령 준수를 점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공급망 행동강령 기준 수립을 위해 아래 문헌 및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공급망 관리 관련 원칙·제도·가이드라인]

- United Nations,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04,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 United Nations, 2020, “UN Procurement Practitioner’s Handbook”
-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18,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s: A Baseline Report”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98,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18,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 OECD (2018),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OECD (2017b),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Key considerations for due diligence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OECD (2015d),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 OECD (201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BSR, UNGC, 2015, “Supply Chain Sustainability: A Practical Guide for Continuous Improvement, Second Edition”

부록 12 분쟁광물 관리

기업은 3TGs(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와 코발트(Cobalt) 및 콩고민주공화국과 인접 국가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광물 및 지역에 대한 원산지를 공개하고 협력사가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 등 적법하게 거래되는 광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분쟁지역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지역에 대한 분쟁광물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 식별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후, 고위험지역의 제련소(Smelter or Refiner, SOR)에 대한 위험 관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증 관리를 통해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위험을 저감하여야 한다.

[분쟁광물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Section 1502
- OECD (2016),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Third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http://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Disclosing the Use of Conflict Minerals,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ttps://www.sec.gov/opa/Article/2012-2012-163htm---related-materials.html>

부록 13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제도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내 유의 행위]

-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염매
-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이 있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있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이와 더불어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금지행위(기술보호조치)와 가맹사업법상의 정보제공(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예상매출액 관련 서류 제공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질서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협약, 기술자료 예치제, 재난 피해 협력업체 지원 등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부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부록 1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구축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이다. CP를 도입하여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도입요건은 총 8가지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은 요건 5를 권장사항으로 할 수 있다. 또한 CP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아래 매뉴얼과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요건]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매뉴얼 및 평가지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 매뉴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 “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0, “CP등급평가 평가지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 “CP등급평가 운영지침”
- 공정거래위원회, 2019, “2019년 공정거래백서”

부록 15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로 구성되는 동반성장지수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록 16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위험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의 증가, 스마트폰 대중화 등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시장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다크넛지** 행위나 개인정보보호 침해와 같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온라인, 모바일 시장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관찰되는 주로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속임수나 정보를 뜻하며, 소비자의 여러 행동편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옆구리를 살짝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로 팔꿈치로 툭 옆구리를 찌르듯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 대표적인 사례로는 디지털 음원 서비스 등에서 최초 가입 시 할인을 제공하고 이후 고지 없이 정상금액을 자동결제 하거나 복잡한 해지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해지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음 (출처: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소비시장 관련 사례 소개]

- 공정거래위원회, 2019, “2019년 공정거래백서” p.456~p.466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2018~2020, “해외소비자정책 동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2021,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 한국소비자원, 2019, “신유형 소비자문제 [다크 넛지] 실태조사”

[온라인 소비시장을 영위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소비자 관련 원칙·제도·관련 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 OECD, 2016 “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 Consumer International, “The Consumer Checklist for an International E-Commerce Deal”

부록 17 소비자 안전 제고 사례

2018년 6월 25일, 미국의 아마존, 이베이, 중국의 알리바바 및 일본의 라쿠텐 등 4개 대규모 온라인 판매업체가 제품 안전 서약(Product Safety Pledge)에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서약의 내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과 후 모든 단계에서 제품 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약에 동참한 온라인 판매업체들은 서약 이행을 위해 실시한 활동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6개월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18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 개발 사례

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통해 규제 강화, 사회적 인식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지역사회와의 공존 등과 같은 비재무적인 위기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다. 나아가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사례 1: 소비자의 효익을 고려한 제품 개발]

핀란드의 아동 아웃도어 의류 제조 기업인 레이마(Reima)는 제품 안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대표적인 제품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반사하는 어린이용 장갑과 의류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에 민감한 소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사례 2: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개발]

크래들 투 크래들 인증(Cradle to Cradle Certified)은 사회적,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제품의 안전성,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제작 단계에서의 친환경성,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한 회사 및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비욘드 미트(Beyond Meat)는 식물성 육류 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류의 건강, 기후변화, 한정된 자원, 동물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사의 목표로 삼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욘드 미트의 제품을 구매하며 일반 육류제품 생산으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이산화탄소 배출, 비윤리적인 동물 사육 등의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다.

영국의 러쉬(Lush)는 화장품 기업으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와 거래하고 최소한의 포장과 보존제를 사용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료의 조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며 포장 쓰레기 감소와 동물 복지 증진,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기여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된다.

[참고: 제품/서비스 접근성 확대]

기업은 다양한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와 효익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웹접근성(Web Accessibility) 및 정보격차(Digital Divide), 금융 포용성(Financial Inclusion) 등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부록 1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

기업은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자율규제단체를 통한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이며 2021년 3월 기준 19개의 업종별 자율규제 단체가 존재하고 소속 회원사는 14만여 개 수준이다.

자율규제협의회에서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평가하게 되며,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자율규약 제·개정,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등 자율규제단체와 회원사의 자율보호 활동 전반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 중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개인정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3개 분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총 102개 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하며, 3년 주기로 갱신한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영향평가를 통해 기업은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 3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제도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정 제도 도입과 동시에 표준안 마련을 진행 중임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관련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되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의 이점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금융사]

2021년 2월 4일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등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보호 실태 상시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점수 및 등급 부여 등이다.

2021년 1월, 금융보안원에서 상시평가 및 자체평가 방법을 기술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기업은 이를 참고하여 자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시평가제는 9대 대항목 및 143개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 대항목은 1) 개인신용정보 동의원칙, 2) 개인신용정보 수집, 3) 개인신용정보 제공, 4) 개인신용정보 보유·삭제, 5)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7) 관리적 보호조치, 8) 기술적 보호조치, 9) 가명정보 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0,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4639?srchCtgr=&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부록 20 지역사회의 정의

지역사회란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 조직, 단체를 의미한다. 회사의 주 사업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ICT 산업 발달 등으로 인해 실제 존재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개념에서 비지역적(Non geographic) 지역사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사업장 인근의 지역만을 지역사회로 규정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개인 및 집단, 또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개인 및 집단 모두를 지역사회로 간주할 수 있다.

부록 21 사회책임경영 이니셔티브 사례

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국내외 사회책임경영 관련 이니셔티브, 자율규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한국게임산업협회,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기준

[해외]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2010, “ISO 26000”, p.85
- COSO, WBCSD, 2010, “Enterprise Risk Management”, p.101

부록 22 사회책임경영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ISO26000 및 각국 거래소에서는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해 공시가 필요한 정보와 정보공개 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별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 SASB, “SASB Materiality Map”, <https://materiality.sasb.org/>
- GRI, “GRI Sector Standards”, <https://www.globalreporting.org/standards/sector-program/>

[ESG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0, “ISO26000”, p.76
- GRI, GRI Sector Standards
-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 Deutsche Börse Group, 2013, “Communicating sustainability”
- HKEX, 2016,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
- European Commission, 2017,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 London Stock Exchange Group, 2018, “Your Guide to ESG Reporting”
- NASDAQ, 2017, “ESG Reporting Guide”
- SGX, 2018,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

7 참고문헌

1. CERES, 2019, "Running the Risk"
2. COSO, WBCSD, 2018, "Enterprise Risk Management"
3. Deutsche Börse AG, 2013, "Communicating sustainability"
4. Frank Vanclay, 2015, "Social Impact Assessment: Guidance for assessing and managing the social impacts of project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5. GRI, GSSB, 2020, "Consolidated Set of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20"
6. HKEX, 2016,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ing Guide"
7. HKEX, 2020, "How to Prepare an ESG Report"
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0, "ISO 26000"
9.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5, "ISO 9001"
1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ISO/IEC 27000"
11. Mckinsey Quarterly, 2019, "Five Ways the ESG Creates Value"
12. OECD (2018),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13. OECD (2018), "Measuring and maximising the impact of product recalls globally –OECD workshop report",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Papers, No. 5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3074957>.
14. PwC, 2013, "Measuring and managing total impact: a new language for business decisions"
15. State Street, 2019. "2019 Proxy Letter"
16. UN PRI, "The Six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pri>
17. UN, 2011,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18. UN, 2020, "UN Procurement Practitioner's Handbook"
19. World Economic Forum, 2019, "The Global Risks Report 2019"

20. 고용노동부, 2020,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21. 고용노동부, 2020,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2. 고용노동부, 200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2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2018, 해외소비자정책동향 제2, 3, 6, 11, 15호"
24.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25. 공정거래위원회, 2020, "소비자정책 기본개념",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29>
26. 구글 투명성보고서 웹사이트,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hl=ko>
27.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HRIAM 가이드)"
28.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9. 국가인권위원회,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30. 권순원, 2020, "사회 모범규준 개정방안 연구보고서"
31. 동반성장위원회, <https://www.winwingrowth.or.kr/index.do>
32.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연구"
33. 코트라, 2019, "EU 진출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핸드북"
3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 "사회모범규준"
35. 한국소비자원, 2018,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03

지배구조 모범기준

① 전문	80
② 이사회 리더십	83
③ 주주권 보호	97
④ 감사	102
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09
⑥ 참고문헌	114

1 전문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 배경

기업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체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자본이동을 자유화하고, 국가간의 교류를 증대하는 등 국제 정합성에 입각한 경쟁력 있는 제도와 관행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우리 기업도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는 투자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기업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 위원회는 우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받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모범규준을 제정한다.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 목적

본 모범규준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의 기반 아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존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은 비용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과 그 구성원은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과 구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우리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업지배구조 관행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모범규준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상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모범기준은 전문,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소통 등 네 부문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배구조 모범기준의 적용

본 모범기준은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기업도 모범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환경은 기업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본 모범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본 모범기준도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지배구조 모범기준의 2차 개정 배경

1999년 9월에 제정·발표되어 2003년 2월에 개정된 모범기준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모범기준을 지침으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사회각계의 활동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자본 시장의 신인도가 적지 않게 향상되었고, 시장참여자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모범기준에 대한 개정 논의는 그간의 기업지배구조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어온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와 각국의 제도개선 동향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과 일부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관행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모범기준은 향후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은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나라들이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 감독기관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환경에 비추어 개선의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는 모범기준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모범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 지배구조 모범기준의 3차 개정 배경

지배구조 모범기준은 그동안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와 제도 개선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2016년 2차 개정 이후, 국제적 수준의 트렌드 변화 못지않게 국내의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도 진전이 있어 이번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개정 지배구조 모범기준은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고, 이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 관점은 경영전략, 위험 관리, 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할 것을 포함한다.

기업집단 소속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사회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모두 주주의 이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경영 승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영 승계는 과거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향후 10년 동안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배 구조 이슈가 될 전망이기에 이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였다.

기업 지배구조는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경영 및 투자 활동에서 주요 관심사항이 되어 왔으며 일부 개선된 사항들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직한 관행이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재무정보 표준화가 보다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모범 기준도 관련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② 이사회 리더십

1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1.1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검토 이사회는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의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영활동이 지속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창출이 주주, 근로자, 고객, 협력사, 채권자 및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원 제공과 기여의 결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이사회와 경영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고 수익성·자본 효율성 등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기업의 목표와 전략방향 수립 및 검토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주요 경영전략과 계획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진행해야 하며, 주요 경영의사결정이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기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ESG 리스크 관리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를 중요 위험관리 사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및 경영진은 경영자원 및 자본의 배분(예: 고정자산, R&D, 인적 자원에 대한 비지니스 포트폴리오 및 투자 검토, M&A 및 투자자산 배분 결정 등)에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지속가능성 추구 기업문화 조성 이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목적 및 가치, 경영전략, 정책, 관행 등이 기업문화와 일치되는지 모니터링 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1.3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결정기능과 감독기능 이사회는 기업운영의 중심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독·견제하고,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요기능〉

-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 기타 ESG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세부기능〉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의
- 대규모 자본지출의 결의
- 대규모 차입 및 지급보증의 결의
-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결의
-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
- 기업 인수합병 관련 주요사항의 결의
- 영업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의 결의
-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 최고경영자 승계 및 후보군의 육성·평가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감독
-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
- 리스크 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
- 조세 전략·거버넌스 수립 및 세무리스크 관리
- 정보공시의 감독
-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

이사회 기능 및 권한사항 명문화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과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이사회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4 이사회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 금지 이사, 경영진 또는 주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내부거래는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를 의미하고, 자기거래는 이사, 경영진 또는 주주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되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 계열사 합병 및 분할, 계열사간 자본거래 등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의 내용 또한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실제적인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내부거래 감독 이사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감독하여야 하며, 그 거래내역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거래와 자기거래의 절차적 정당성 및 거래 조건 공정성의 판단근거를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판단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이사회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리스크 관리는 금융위기나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불확실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커져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비재무 요소인 ESG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 리스크 관리 위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는 여건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준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전담인력 기업은 전담인력의 배치와 책임자의 지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해야 하며, 실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검토 이사회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매년 검토하고 검토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1.6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비상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승계시스템 구축 책임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될 자의 발굴, 육성, 최고경영자 및 고위 경영진의 은퇴, 고령화, 기타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 승계는 CEO 리스크를 방지하는 이사회的重要 업무에 해당하며, 특히 대표이사는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를 육성할 책무가 있다.

경영승계 내부규정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 주체, 관련 절차 등을 정할 것을 권고한다.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교육제도 등 관리 방법
-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지원부서의 구성·권한·책임사항
-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경영승계 주요사항 공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후보군 관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7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주요 업무 최고경영자 승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경영승계계획 수립,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설정,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후보자의 발굴 및 후보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추천위원회에 권고되는 업무 최고경영자 승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주총회에 추천 후보 선임 사유·대표이사 승계프로그램·대표이사 후보군 육성현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는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 기업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이사회의 책무 이사회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의 감시·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는 해당 기업이 기업집단에 속해 지배주주 또는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 및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가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경영권 방어행위의 감독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써 자기주식 등 기업의 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영진과 주주 또는 경영진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와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대응 방안, 주주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기업인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0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요사항과 주요 경영진의 보수는 공시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성이란 각 기업이 중대성(Materiality) 평가를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의미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는 보수정책 수립 이사회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 및 관행을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하고, 임원의 등기·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경영진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여야 한다.

허위 기재 등에 의한 성과보수 환수 기업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회계부정,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등으로 발생한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보수정책 및 내역 공시 기업은 실지급 보수금액, 실지급 대상 인원, 주요 경영진의 보수 내역과 보수 산정 기준,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을 포함하는 보수정책을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보수정책 및 산정근거 설명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보수정책 및 보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주주의 참여와 감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의 기술개발,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 이사회는 경영진 및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회 평가의 필요성 경영진 및 이사의 활동내용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사회 평가방법과 절차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단위,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외부자문을 받아 설계할 수 있다. 직무수행 내용은 기업의 실적 및 추가상승률, 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여부, 동종 산업 내 타 기업의 보상내용 등을 포함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사회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가 활동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당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활동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며 경영진 및 이사에 대한 보상심의 또는 재선임 결정의 근거자료로 이용한다.

이사의 보수 이사의 개인별 보수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것을 권고하며, 대표이사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보상위원회는 사전에 마련한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이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성과목표를 공유받고 재조정 및 승인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직무와 보수 경영진 및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인 만큼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과도한 퇴직보상금 수령 제한 기업은 과도한 퇴직보상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임원 퇴직보상금 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할 때 퇴직보상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기본보수 책정 및 지급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야 한다.

※ 본 모범규준에서 이사란 등기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2

이사의 역할과 책임

2.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사의 주의의무 기업과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기업의 현안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이사의 정보 수집 및 법령 위반 감독 이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에게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이 법령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는지 주의를 다하여 살펴야 한다.

2.2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사의 기업비밀 이용행위는 그것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대외적인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주주, 채권자 등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2.3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기업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이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업과 계약이나 기타 거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그 내용 및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은 이해 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서도 안 되며, 회사는 이와 같은 이사를 재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이사의 적절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기업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수도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 다만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업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사기, 위법, 이해상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5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거액화되고 있다. 이 경우 이사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책임추궁소송의 실효성이 감소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기업이나 제3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는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부담 설정 그러나 기업이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전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기업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적용 범위 및 자기부담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사회 구성

3.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적정 이사회 규모 이사회 규모는 기업 규모, 영업의 환경 및 특성 등에 적합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효과적인 토의가 가능하고, 적정하고 신속하며 신중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3.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목적 사외이사제도의 핵심 목적은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에 비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적정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규모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감독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본 모범규준에서 대규모 상장법인이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을 의미한다. (상법상 대규모 상장법인: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3.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등기이사의 자격요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재무상태, 이사회결의 관련 사항 등 주주가 의결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자기거래 등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3.4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자란 당해 기업에 적합한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이사 임기의 존중 주주총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불법행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현저한 직무 부적합 사유가 없는 한, 선임된 이사가 전체 주주의 경영 대리인으로서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기가 존중되어야 한다.

3.5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 다양성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경험·능력·성별을 조화를 이루어 다양성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고 효과적인 토론을 거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4

사외이사

4.1 사외이사는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는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기업 및 특수관계인과 직접적인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 계열사, 연결모자회사,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 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기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말한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스스로도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기업은 사외이사 후보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공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기업·경영진·지배주주와 직무 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기타 이해관계 공시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더라도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서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외이사는 즉시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업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3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과도한 겸직 및 경업 금지 다수의 기업에서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분산 되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사외이사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의 영위 사업과 연관된 경제적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계에 속한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직 등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4.4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 할애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자신의 결정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제공된 자료를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직무수행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사외이사는 장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등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여 경영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주를 포함한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이사회 운영

5.1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는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 감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임사외이사(lead outside director)를 선임하여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 내 이사회 의장, 선임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의 책임은 각각 명문화되어야 한다.

선임사외이사의 역할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또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이사회 의장은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의 역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리더로서 개방적인 토론과 효율적인 이사회 진행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의장은 이사와 이사, 이사와 주주, 이사와 이해관계자, 이사와 경영진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 이사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제정의 필요성 이사회는 다수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회의 권한, 구성,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4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정기이사회 개최의 필요성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정기이사회 개최빈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이사회 일정의 수립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기이사회를 규정하거나 직전 이사회에서 차기 일정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외이사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의일자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이사회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5 이사회 및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토의 및 결의된 내용과 이사 개인별 발언 및 찬반 등에 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업은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상세하고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이사는 해당 회의록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5.6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통신수단의 활용과 참여의 기회 보장 이사회는 모든 이사에 동등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부 이사가 이사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통신수단(음성 또는 화상 및 음성)을 제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5.7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사외이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이나 경영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외이사들이 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외이사가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청 권한 사외이사는 기업의 경영목표나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는 기업의 업무담당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기업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사외이사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

5.8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의 지원 제공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임·직원이나 법률고문·경영자보상 관련 컨설턴트 등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소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5.9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사외이사 회의의 운영 사외이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외이사 간의 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사외이사들은 사외이사 중에서 대표(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의 회의를 주관하게 하거나 사외이사가 위임하는 중요사안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할 선임사외이사의 성명과 선임 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은 사외이사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소통 기업은 사외이사와 경영진이 경영사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경영진이 기업경영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5.10 사외 이사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에 참가할 것을 권고한다.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 이사는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선임된 이사는 직무 및 지배구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이사의 역할 효율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1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이사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개별 이사의 평가결과는 보수 및 재선임 결정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는 각 활동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결과는 이사회 승계 및 이사회 운영 개선에 활용된다.

개별 이사 평가 전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개별 활동 및 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결과는 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5.12 이사회는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사회 권한 위임의 의의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제외한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게 대폭 위임하거나,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6.1 이사회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한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목적 시간적·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전체 이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적합한 이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이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를 발굴하는 것이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설화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뿐 아니라 상근감사위원 후보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위원회의 역할 보상위원회는 이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사의 보상수준을 결정한다.

내부거래위원회의 역할 내부거래위원회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거래가 공정한 절차 및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 및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함으로써 실질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공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 개최 및 활동내역 공유 각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주주총회에 그 활동내용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6.2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요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보수 결정, 내부감사, 내부거래, 사외이사후보 추천에는 높은 독립성이 요구되며, 사외이사에 의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도한 위원회 중복 소속 지양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6.3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번복 지양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번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이사회 내 위원회는 활동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위원회의 설치목적
-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 위원회의 연간 활동 및 성과평가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면
- 위원회의 구조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

③ 주주권 보호

1

주주의 권리

1.1 기업은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주주의 권리 보호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업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의 정보제공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2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주권 보호가 요청되는 주요사항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관의 변경
-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해산
- 자본의 감소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의 증가 등

주주권 보호 방안 강구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사업 및 소유구조 변동에 있어 반대주주 및 일반주주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행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대규모 자산양수도 등 기업의 존립 및 주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여 주주가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기업은 1주 1의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이해관계 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현행 상법은 모든 주주에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상법 및 일부 법령은 예외적으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배 주주의 무제한적 의결권 행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1.4 이사회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제도 기업인수를 통한 경영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이익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주식매수가격은 기업과 반대주주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가 기업인수에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시장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해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실제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기업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반면,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다른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배주주의 정의 지배주주는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 등 당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지배주주는 개인, 법인, 기관투자자 등 모든 주주를 포함한다.

지배주주의 책임 기업경영의 책임은 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이사회나 경영진의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해당 이사회나 경영진이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사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소수주주권 보호 기업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이 적절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과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경영 간여는 이사의 책임 강화나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억제될 수 있다.

2

주주총회

2.1 이사회는 다양한 주제의 의제 또는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열린 논의 환경 구축 주주총회는 주주와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주주 다수의 의견을 듣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구다. 주주의 관심사항이 전통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주제 및 형태의 안건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의안의 분리 상정 임원 선임이나 정관 변경과 같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임원 또는 조문마다 의안을 분리 상정하여 안건별로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의안 관련 정보 제공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가 의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결정 그리고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주주의 참석이 용이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주주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분산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총회 개최의 통지 기업은 최대한 많은 주주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급적 주주총회 개최일 28일 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2.4 기업은 주주가 이사 및 감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원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기업은 주주에게 임원후보에 대한 정보와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원후보에 대한 정보는 주주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원후보자에 관한 공시 다음 사실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최대주주와의 관계
- 계열회사와의 최근 5년 이내의 관계
- 세부 경력 및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해당 회사 및 계열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사업상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
- 최근 5년 이내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된 기업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의 유무
- 최근 3년 간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균 참석률

2.5 기업은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가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에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기업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안건을 최대한 빨리 공시하여 주주가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임장 권유에 대한 지원 회사는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의결권 대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주주명부를 제공하거나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활용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신종 바이러스 팬데믹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져 대면 총회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전자통신 수단의 발달과 외국인주주 및 일반주주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주가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투표 용지, 참고서류 및 반송용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권 행사 지원 이사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주제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은 주주가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할 때 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6 이사회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 이사후보의 선정과 이사의 선임 과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후보의 선정과 이사의 선임 과정에 일반주주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주주 참여 다양한 주주의 참여 증대로 인해 주주의 지향점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사후보의 선정과 이사의 선임 과정에 이러한 주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이사의 선임 시 주주 추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집중투표제 채택의 목적 특히 국내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2.7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안건은 다른 이사 선임안건과 분리하여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안건 분리 감사위원의 과반수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는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8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주주권 행사 방해 행위 금지 주주총회 개최 전 또는 주주총회장에서 의결권 다툼을 방해하거나 충분한 토론을 막는 행위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에게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외에는 의안결의 전에 충분한 질의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주주총회 결과의 공개 현장 표결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은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를 공개하여 주주들이 주주총회 결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4 감사

1

내부감사

1.1 대규모 상장법인은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경영활동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현대 기업에서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경영 및 투명경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2 감사 및 감사위원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감사 및 감사위원은 해당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기업과 직접적인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자, 계열사, 연결모자회사,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 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기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말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사 및 감사위원 스스로도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최소 2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구성 감사위원회는 회의체로서의 원만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신분 보장의 필요성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신분을 보장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감사업무는 전문성을 요한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회계기준,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위원 중 적어도 2인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일 것이 요구된다. 이때 구체적인 관련 경력 및 향후 기대되는 역할 등 해당 위원이 재무·회계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에서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4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감사업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 감사부서의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 평가
- 내부 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예의 사후보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 내부 및 외부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부정행위 및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발, 사실 조사, 후속 조치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주요 업무 1: 직무집행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책임은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뿐 아니라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2: 재무보고 검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재무보고의 질과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 주주뿐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협력사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재무보고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

주요 업무 3: 회계기준 타당성 평가 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의 타당성은 정확한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회사가 타당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변경은 기업회계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회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경이 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4: 내부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이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 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5: 내부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감사기구 산하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보좌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6: 내부감사부서 활동 감독 및 평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조직,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내부감사활동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7: 내부감사조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사후 보고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대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 추천 시 주요 채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업무 9: 외부감사인 평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감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감사업무에 따른 충분하고 합리적인 감사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임하는 경우 당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요 업무 10: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승인 회계감사 이외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는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러한 사전 승인의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업무 11: 외부감사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에 중대한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건의하고 사후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중요 시정사항이 업무집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12: 이사 부정행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이사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발, 사실 조사, 후속 조치 등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내지 감사 직무규정 마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목표, 사명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권한, 의무, 책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운영규정으로 명문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만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감사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6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외부감사인 등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분기별 개최의 필요성 분기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분기보고 과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연간 감사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공식적인 회의와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영진, 내부감사부서 직원, 외부감사인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 참석 대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외부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영진의 업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의 경우에는 경영진은 참석시키지 않아야 한다.

1.7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감사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감사록은 이사회 회의록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내부 정보 접근성 확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내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 자문 활용에 대한 지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직원이나 외부감사인의 협력뿐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기타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또는 기타 관련 내규에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이용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의 배경·내용·비용과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독립성 및 주요 활동내역 공시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의 경력, 기업과의 중요한 거래의 유무,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의무 이행 여부 및 기타 주요 활동내용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10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업무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업무의 양과 책임의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다른 명목의 보상은 받지 않아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업무 및 책임을 고려한 적정 보수 지급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산정 시에는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이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이사 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가 있는 경우 보상위원회가 감사위원의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위원회 직무 외 보수 제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 이외에 다른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직무 외 보수의 사례로는 회사의 연구용역, 법률자문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지급되는 보상, 해외여행·골프장 이용 등 복지 형태의 보상 등을 들 수 있다.

1.11 기업은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윤리규정의 주요 내용 산업별/기업별로 주요 부패방지 이슈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를 반영한 고유의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은 청렴성과 신뢰, 정직성을 바탕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하되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차별 금지
- 임직원의 사익편취 금지
- 임직원의 횡령·배임 금지
- 임직원의 부패행위 금지
- 임직원의 돈세탁 및 내부자 거래 금지
-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
-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독과점 및 반경쟁 행위 금지)
- 회사 또는 고객의 비밀 정보 및 내부 정보 등 정보기밀 준수
-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 환경·안전·보건 의식 함양
- 불법적·비윤리적 행위 발생시 보고 의무 및 내부고발 보호

공급망 및 이해관계자 윤리규정의 적용 대상을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자회사, 계약업체, 협력사, 합작 투자사 까지 포괄하여 기업과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윤리규정 준수를 독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윤리규정 준수 이행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공급망과 이해관계자의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 규정 준수 노력 기업은 윤리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 및 절차를 구축하고 제3자 기관에 의한 심사, 검증,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전사적 측면과 각 부서별 측면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보고 라인을 구축하며, 헬프데스크, 핫라인, 옴부즈맨 등 상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준수를 근로자 성과 평가와 징계 및 보상 체계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

2.1 기업은 외부감사인인 해당 기업과 그 경영진, 지배주주, 연결모회사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기업의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는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회계감사 외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이 없는 경영자문 등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성공보수 약정 설정
-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가 3년을 초과하여 감사

2.2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용이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참석시켜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참석 기업이 주주의 경영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주주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협의 및 보고사항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대한 회계정책

- 경영진의 판단이 미친 회계처리와 회계추정
- 중대한 감사수정사항
- 경영진과 의견이 불일치되는 사항
- 외부감사 수행 시 애로사항 등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여야 한다.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을 참고 바랍니다.

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1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1.1 이사회와 경영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장 또는 소통 담당 사외이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필요성 이사회와 경영진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또는 우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소통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넓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다.

ESG 논의 확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은 기업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에까지 이르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의 의견이 교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 담당 사외이사의 지정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의사결정에 대해 파악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통의 결과 공유 소통 담당 사외이사는 소통을 통해 지득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이사회에 공유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수준의 반대가 있었던 안건에 대해 사후 검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반대 주주와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총회 결과 검토 이사회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 주체이므로 안건의 가결 여부뿐 아니라 찬반 결과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상당한 수준의 반대가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반대 주주와의 소통 및 사후 조치 공개 이사회는 주주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반대 주주의 우려를 해소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안건 반대 주주와의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주주의 반대 비율 고려 상당한 수준의 반대 비율은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설정하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찬성 비율은 제외한 실질적 반대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보 공개

2.1 기업은 주주에게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 주주는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사항 이외에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은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이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 및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여야 한다.

2.2 기업은 이해관계자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성 기업의 영위에는 주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고객, 협력사, 채권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도 필요한 기업 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기업은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

2.3 기업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의 중요성 기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공시는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로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장참가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억제 하는데 기여한다.

주요 공시 항목 기업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외에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적시에 주주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주요 공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공시 외 주요사항 결정에 대한 정보
- 2) 경영성과,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
-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4) 지배구조 관련 공시 등

주요 공시 항목 1: 정기공시 외 주요사항 결정에 대한 정보 공시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무공시사항뿐만 아니라 공시정보의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기업은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의 내용 외에 참석이사와 표결결과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기업이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재무구조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기업의 재산, 영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 채권, 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중요한 투자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의 경영권 및 관리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배당의 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변경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참석 이사별 표결 결과, 반대사유 및 수정의견

주요 공시 항목 2: 경영성과 및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 공시 기업은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예측재무정보는 최소한 향후 3년간의 예측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예측정보라는 사실, 예측정보의 가정 또는 판단근거 및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공시하고 불리한 사항은 공시를 회피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기밀사항과 같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과 연구개발성과와 같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시를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 공시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루는 자이므로 기업은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지분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과 기업에서의 지위, 기업과의 거래관계 등이 적시에 상세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 4: 지배구조 관련 공시 기업은 자신의 고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지배구조를 설계하므로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 운영이 모범규준과 중대한 차이가 있다면 자신의 기업지배 구조와 본 모범규준과의 차이 및 그 이유, 향후 변경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기업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거나, 홈페이지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여 주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기업의 대표이사과 재무담당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대표이사 및 CFO의 책임 대표이사과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보고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중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사항이 정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과 재무담당 책임자는 재무보고 자료를 기업의 감사위원회와 검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5 기업은 정보 공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개의 필요성 산업의 다각화·첨단화·전문화로 기업정보가 전문용어로만 공시될 경우 정보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정보는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해설을 병기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애매모호한 용어의 사용도 지양되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한 공시의 필요성 기업은 영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수시공시사항 및 기업설명회 자료를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감사·보상·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기업윤리규정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권고한다.

2.6 외국인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감사보고서 및 중요한 수시공시 사항을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공시의 필요성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숫자 및 지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주를 감안하고, 나아가 기업이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문공시의 필요성이 크다. 공시에 있어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다수의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만이라도 영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기업은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시책임자 지정 필요성 공시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공시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 정보전달체계 마련 기업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시책임자에게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공시가 필요한 정보 발생 시 공시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참고문헌

1. COSO, 2018, “Enterprise Risk Management”
2. FRC, 2018, “Guidance on Board Effectiveness”
3. FRC, 2018,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4. HKEX, 2018, “HK Corporate Governance Code(Appendix14 of the Main Board Listing Rules)”
5. ICGN, 2017,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6. ISG, 2018,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U.S. listed companies, ISG Governance Principles”
7. JPX, 2018,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
8. OECD, 2011,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9. OECD, 2015,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10. Monitoring Commissie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6, “The Dutch Corporate Governance Code”
11. NYSE, “Listed Company Manual”
12. 금융위원회, 2014,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13. 상법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채이배의원 등 10인, 2020, 상장회사법안
1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07, “이사회평가 가이드라인”
1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08, “보상위원회 가이드라인”
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 ”사회모범규준”
2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6,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9,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ESG 모범기준

발 행 2021년 8월

발 행 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본관 4층(여의도동, 한국거래소)

TEL. 02-3775-3339 FAX. 02-3775-2630

홈페이지 www.cgs.or.kr

ESG

모범기준